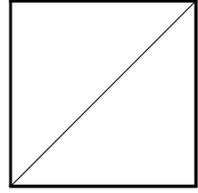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15 호	보 고 사 항
보 고 연 월 일	2023. 5. 3. (제 9 차)	

2022년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결과 보고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금융감독원장 이 복 현
제출 연월일	2023. 5. 3.

1. 보고주문

- 2022년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결과를 별지와 같이 보고한다.

2. 보고이유

-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포상금 지급결과를 보고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포상금 지급건수(금액) : 2건(1억 850만원)

* 신고 내용이 불공정거래행위의 적발이나 그에 따른 조치 등 조사 업무에 기여한 경우 포상을 실시

4. 참고사항

-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하는 사항임

(별지)

2022년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결과 보고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관련 포상금 지급결과

○ 포상금 지급건수(금액) : 2건(1억 850만원)

* 신고 내용이 불공정거래행위의 적발이나 그에 따른 조치 등 조사업무에 기여한 경우 포상을 실시

- 관련 위반 유형은 부정거래 2건이며, 단일 건에 대한 최고 지급금액은 5,850만원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현황】

(단위 : 건, 만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1/4	2/4	3/4	4/4	계
지급건수	1	6	-	-	-	-	2	2
지급금액	1,840	13,585	-	-	-	-	10,850	10,850

* 포상금 지급건수(지급금액)는 포상금 지급대상 사건의 조치일 기준으로 산정

관 계 법 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5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제4편의 불공정거래행위, 그 밖에 이 법의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5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신고 또는 제보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 또는 제보자(이하 이 조에서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경우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신고자등이 소속된 기관·단체 또는 회사는 그 신고자등에 대하여 그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신고자등이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신고자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방법 및 처리, 신고자등에 대한 통지방법, 신고자등의 보호와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8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 ③ (생략)

④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4조(위법행위의 신고 등) ① 법 제435조제1항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의 위반행위 또는 위반행위의 강요나 제의를 받은 사실(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거래행위등”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법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5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신고하거나 제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신고 또는 제보하는 내용이 특정인의 불공정거래행위등과 관련이 있을 것
 2. 위반행위자, 일시, 장소 등 불공정거래행위등의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적시하고 그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할 것
 3. 신고 또는 제보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고자등”이라 한다)의 신원을 밝힐 것
- ② 금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 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등을 상대로 인적 사항, 신고 또는 제보의 경위 및 취지, 그 밖에 신고 또는 제보한 내용을 특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 ⑦ (생략)
- ⑧ 금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가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적발이나 그에 따른 조치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신고자등에게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신고 또는 제보의 접수방법 및 처리절차,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87조 (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① ~ ② (생략)

- ③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438조제4항에 따라 별표 20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 ④ 거래소, 협회 및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20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

1. ~ 103. (생략)
104. 법 제43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보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처리 및 문서 통지. 다만,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5. ~ 160. (생략)

□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자로서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주가변동, 공시자료, 언론보도 등 일반에 공개된 자료는 제외한다)를 제출한 자에게 지급한다.

1. 법 제174조의 규정에 따른 미공개정보이용행위
2. 법 제176조의 규정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3. 법 제178조의 규정에 따른 부정거래행위등
4. 법 제17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시장질서 교란행위
5. 법 제17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누설 등 행위
6. 법 제119조·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증권신고서 등에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및 증권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 다만,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가 법 제119조·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증권신고서 등의 재무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법 제159조제1항·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다만,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가 법 제159조제1항·제160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의 재무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략)

제40조(포상결정 등) ① 포상은 예산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조사결과 조치가 확정된 날로부터 4월 이내에 실시한다.

② 감독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 분기별 신고내용을 심사하여 포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포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감독원장은 매년초 전년도 포상금 지급결과가 확정된 후 지체 없이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본시장조사총괄과	기획조사국
연 락 처	02-2100-2605	02-3145-5560